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03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박지원 · 서영교 · 김의겸
김한규 · 김남희 · 이성운
박균택 · 김동아 · 김용민
김기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刑事訴訟法 또는 軍事法院法の 規定에 의하지”를 “「형사소송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에 따르지”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第1項 및 第2項”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사”를 “수사처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1항 · 제2항”을 “제2항, 제3항”으로 한다.

① 제2항 및 제3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 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 ·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나 군사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처검사,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검사(이하 “수사처검사등”이라 한다)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 법원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제6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각 “수사처검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검사”를 각각 “수사처검사등”으로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군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請求 또는 申請한 檢事・司法警察官”을 “청구 또

는 신청한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본문 중 “검사는 제6조제1항”을 “수사처검사등은 제6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처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 한다)는 같은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제3항”으로, “검찰송치”를 “검사에게 송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검사”를 “수사처검사등”으로 한다.

⑤ 수사처검사등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보는 같은 법률의 특별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관할 보통검찰부장에게 각각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의3제1항 본문 중 “검사는”을 “수사처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송치”를 “검사에게 송치”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검사는”을 “수사처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송치”를 “검사에게 송치”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검사는”을 “수사처검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수사처검사등 또는 사법경찰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검사”를 “수사처검사등”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를 “(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사”를 각각 “수사처검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을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및 검사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검사, 사법경찰관”을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및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범죄수사를”을 “범죄수사 등을”로 한다.

③ 검사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3의 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를 “(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

의 부분 본문 중 “공소제기·검찰송치”를 “공소제기 또는 검사에게 사건 송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각각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형의 집행을 위한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13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를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으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보는 같은 법률의 특별검사에게,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관할 보통검찰부장에게 각각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의4제3항 중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제13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5조의3 중 “제13조제7항”을 “제13조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3條(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法과 刑事訴訟法 또는 軍事法院法の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公開되지 아니한 他人간의 對話를 녹음 또는 聽取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당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5. (생략) ②·③ (생략)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절차) ①檢事(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第5條第1項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法院(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被疑者별 또는 각 被內査者별로 통신제한조치를 許可하여 줄 것을 請求할 수 있다.	第3條(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 ①-----「형사소송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에 따르지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절차) ① 제2항 및 제3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 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나 군사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司法警察官(軍司法警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第5條 第1項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檢事에 대하여 각 被疑者별 또는 각 被內査者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許可를 申請하고, 檢事는 法院에 대하여 그 許可를 請求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通信制限措置請求는 필요한 通信制限措置의 종류·그 目的·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당해 通信制限措置가 第5條第1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처검사,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검사(이하 “수사처검사등”이라 한다)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 법원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

項의 許可要件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請求理由를 기재한 書面(이하 “請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請求理由에 대한 疏明資料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被疑者 또는 被內查者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⑦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

-----.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

-----제2항 또는 제3항-----

-----.

⑧ 수사처검사등-----

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
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 5. (생략)

⑨ 법원은 제1항·제2항 및 제
7항 단서에 따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
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
게 통지한다.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 ①·② (생략)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제4항부
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군
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
으로, “법원”은 “고등법원 수석
판사”로, “제5조제1항”은 “제7
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제6조
제2항 및 제5항 중 “각 피의자
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
제한조치”는 각각 “통신제한조

-----.

-----.

1. ~ 5. (현행과 같음)

⑨ ---제2항, 제3항-----

-----.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6조제3항부터 제6
항까지 및 제9항-----
-----.

-----제6조
제3항-----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 수사
처검사등-----

② 수사처검사등-----

③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 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 감청서(이하 “긴급감청서등”이라 한다)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 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③ 군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군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사처검사등-----

-----.

⑤ 수사처검사등-----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⑥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 수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한 경우 폐기이유·폐기범위·폐기일시 등을 기재한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한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분(副本)을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내사자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⑦ ~ ⑩ (생략)

第9條(通信制限措置의 執行) ①第6條 내지 第8條의 通信制限措置는 이를 請求 또는 申請한 檢事·司法警察官 또는 情報搜查機關의 長이 執行한다. 이 경우 遞信官署 기타 관련기관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執行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⑥ 수사처검사등

⑦ ~ ⑩ (현행과 같음)

第9條(通信制限措置의 執行) ①-----
-----청구 또는 신청한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수사처검사등은 제6조제2항-----

. -----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
사처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 한다)는 같은 법률-----

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그 통보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② ----- 제6조 제3항

--검사에게 송치-----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수사처검사등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4항에 따라 통지를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
사처검사가 제4항에 따라 통지
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수사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검
사 및 군사법경찰관이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
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
리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⑥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
수사기관의 장은 제4항 각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
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
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송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
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
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수사처검
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에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보는 같은 법률의 특별검사에
게, 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공
소청장에게, 군검사 및 군사법
경찰관은 관할 보통검찰부장에
게 각각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사처검사등-----

-----.

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
행에 관한 통지) ① 수사처검
사등은-----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 lines are light gray. There are no other markings or text on the page.

② -----

----- 검사에게 송치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① 검사는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6조 또는 제8조(제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을 제12조제1호에 따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하여 보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보관등의 승인을 청구하여야

[illegible]

제12조의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① 수사처검사등은-----

[illegible]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5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한 때에는 폐기의 이유와 범위 및 일시 등을 기재한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내사자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고, 폐기일부터

⑥ 수사처검사등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

제13조(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수사처검사등

② 수사처검사등

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
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
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
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
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
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
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
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

_____.

1. · 2. (현행과 같음)

③ 검사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
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

⑤ 제4항-----

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

-----.

⑥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및 검사는 제4항-----

-----.

⑦ -----제4항-----

-----.

⑧ -----수사처 검사등, 사법경찰관 및 검사--

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등 관련 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⑨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 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

-----.

⑨ -----
-----제8항-----

-----.

⑩ -----
--범죄수사 등을-----

-----.

제13조의3(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

1. -----공소제

기·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가. 수사처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

나. (생략)

2. 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제6조

기 또는 검사에게 사건 송치--

가. -----

-----서울중앙지

방공소청 -----

나. (현행과 같음)

2. -----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가. 수사처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기소 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나. (생략)

3. (생략)

<신설>

② (생략)

가. -----

-----서울중앙지
방공소청 -----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형의 집행을 위한 경우: 통
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 (현행과 같음)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처검사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③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보는 같은 법률의 특별검사에게,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관할 보통검찰부장에게 각각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

⑤ -----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로부터-----

-----.

⑥ -----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 ⑦ (생략)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② (생략) ③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는 <u>제13조제4항 및 제5항</u>을 준용한다. 제15조의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제13조제7항</u>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u>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u>----- ----- ----- -----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제13조제5항 및 제6항</u>----- -----. 제15조의3(시정명령) ----- -----<u>제13조제8항</u>----- ----- ----- ----- ----- -----.
--	--